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| | | | |
| **공급자적합성확인서** | | | | |
|  | | | | |
| 확인자 | 회사명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대표자 | | 전자우편 | |
| 주소 | | 전화번호/팩스번호 | |
| 제조업자 | 회사명(국가)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대표자 | | 전자우편 | |
| 주소 | | 전화번호/팩스번호 | |
|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 제품 | 제품명 | | 제품정격 | |
| 기본모델명 | |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| |
| 파생모델명 | | 적용안전기준 | |
|  | | | | |
| 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. | | | | |
| 년 월 일**장** | | | | |
| **확인자** | |  | | (서명 또는 인) |
|  | | | | |
|  | | | | |
| 첨부서류 | 1. 제품설명서(사진을 포함합니다)  2. 시험결과서(정격, 전기회로 도면,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,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,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,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) | | | |
| ※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. | | | | |
| 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 | | | | |